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행정실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07. 11. 5.

개정 2010. 3. 11.

개정 2019. 5. 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행정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) 연구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연구 및 학술활동의 기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
4.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장이 연구와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연구행정실에 연구부학장을 두며, 연구부학장을 보좌할 연구행정실 주무자 및 업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부학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세칙) 연구부학장은 연구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제75호, 2007.11.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90호, 2010.3.11.)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130호, 2019.5.3.)

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